

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·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·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24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·평가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지역에 대한 재해원인 조사·분석·평가와 피해 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5조)
- 현지조사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- 회의개최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- 회원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(구포동)], 전화 309-4094, 팩스 309-4099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붙임 :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·평가에 관한 조례안 1부.

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과 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)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평가를 위하여 “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자연재해 업무담당 국에 둔다.

제3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.

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·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1. 협회 또는 학회(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)

2. 각급 대학(부설기관을 포함한다)

3.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(지점이나 지부를 포함 한다)

4.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

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사·분석·평가 대상 :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

2. 구성 시기 :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

3. 해제 시기 : 조사·분석·평가 완료 후

4. 운영 방법 :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(서면 결의를 포함)으로 의결

제4조(회원 등록 등) ① 회원으로 등록(변경)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(변경)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의 자격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

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 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
2.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
3.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현지 조사업무)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그 기간·지역·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.
-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, 회원들에게 조사장비·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결과 보고서 제출 등)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·완료하고,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·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.
-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개최) ① 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 수행·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각각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-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

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, 유·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,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개최 일시, 장소 및 결과
2. 참석자 성명(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)
3. 의안내용
4. 참석자 발언요지
5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회원 의무)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.

제11조(경비지원)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른 수당과 여비
2.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「통계법」에 따라 조사·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는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
3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『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』 등록(변경) 신청서

회원번호		희망	<input type="checkbox"/> 예방 <input type="checkbox"/> 대비·대응
접수	년 월 일	업무 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복구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관련
개인·단체명(대표자명)			
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	
주소 : (-)		전화 : ()	
		FAX : ()	
E-mail :			
Home-page :			
담당자 직위 및 성명 : (기관 및 단체일 경우)		연락처	사무실 : 휴대전화 :
주요 업무 분야 : (변경 사유)			

위 기관(단체)은 「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」 회원으로 등록(변경)하고자 「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기관·단체) : 인

[별지 제2호서식]

부산광역시 북구 제○○호

회원증

개인·기관(단체)명 :

대 표 자 :

생 년 월 일 :
(사업자등록번호)

주 소 :

위 개인·기관(단체)은 「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를 위한 「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」 회원임을 증명함.

년 월 일

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